

1. 개정 이유

설치인정기준의 예외 인정 및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군지역 시설기준 완화를 통해 의료취약지 등 병상이 부족한 지역 내에서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, 예외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신설함
- 나.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군 지역의 설치인정 시설기준을 50병상 이상으로 함.
단, 5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장비를 공동활용하여야 하고,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100병상 이상이어야 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공공성 및 지역의 의료자원 분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설치인정기준의 예외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.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별표 1 제2호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군 지역 시설기준을 “1) 5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다. 2) 5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여야 하고, 이 경우 공동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의료기관과의 병상합계가 100병상 이상이어야 한다.”으로 한다. 비고4.의 나목을 “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같은 법 제19조제1항 및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1조의 시설기준 등에 따른 정신병원·정신과의원”으로 한다. 비고4.의 다목을 삭제한다. 비고6.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설치인정기준 등) ① 제2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특수의료장비는 별표 1의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u><후단 신설></u>	제3조(설치인정기준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다만,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공공성 및 지역의 의료자원 분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설치인정 기준의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
<u><신 설></u>	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설치인정기준의 예외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.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② (생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■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[별표 1]

2. 시설기준

가.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및
전산화단층 촬영장치

특수의료 장비	전산화단층 촬영장치
항목	
시 지역 (광역시 의 군 포 함)	1)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 만 설치할 수 있다. 2)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 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 려면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 활용하여야 하고, 이 경우 공동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 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 동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의 료기관과의 병상합계가 200 병상 이상이어야 한다.
시 설 기 준	1) <u>100병상</u> 이상인 의료기관 만 설치할 수 있다. 2) <u>100병상</u> 미만인 의료기관 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 려면 다른 의료기관과 공 동활용하여야 하고, 이 경 우 공동활용을 위하여 별 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 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100병상 이상이어 야 한다.
군 지역 (인구가 10만 명 이하 인 시 지역 포함)	

비 고	1. 종합병원은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의 시설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한다. 2. 시설기준 중 자기공명영상 촬영장 치 및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공동 활용에 관한 동의는 각각의 장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중복 하여 할 수 없다.
--------	---

■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[별표 1]

2. 시설기준

가.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및
전산화단층 촬영장치

특수의료 장비	전산화단층 촬영장치
항목	
시 지역 (광역시 의 군 포 함)	1)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 만 설치할 수 있다. 2)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 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 려면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 활용하여야 하고, 이 경우 공동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 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 동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의 료기관과의 병상합계가 200 병상 이상이어야 한다.
시 설 기 준	1) <u>50병상</u>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다. 2) <u>50병상</u>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 면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 활용하여야 하고, 이 경우 공동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의료기관과의 병상합계가 100병상 이상이어야 한다.
군 지역 (인구가 10만 명 이하 인 시 지역 포함)	

비 고	1. 종합병원은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의 시설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한다. 2. 시설기준 중 자기공명영상 촬영장 치 및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공동 활용에 관한 동의는 각각의 장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중복 하여 할 수 없다.
--------	---

3. 특수의료장비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소재한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와 동일한 시·군·구에 소재하거나 지리적으로 경계가 인접한 시·군·구에 소재한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. 4. 다음 각 목의 병원 등의 병상은 공동활용병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. 가.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, 치과의원, 한의원 및 조산원. 다만, 「의료법」 제43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한 한방병원은 제외한다. 나. 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「정신보건법 시행규칙」 제7조의 시설기준 등에 따른 정신병원·정신과의원 다. 「결핵예방법」 제25조에 따른 결핵병원 5. 공동활용병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은 자체병상을 확보하여도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없다. 6. 섬 지역 등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인정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다.	3. 특수의료장비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소재한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와 동일한 시·군·구에 소재하거나 지리적으로 경계가 인접한 시·군·구에 소재한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. 4. 다음 각 목의 병원 등의 병상은 공동활용병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. 가.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, 치과의원, 한의원 및 조산원. 다만, 「의료법」 제43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한 한방병원은 제외한다. 나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같은 법 제19조 1항 및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1조의 시설기준 등에 따른 정신병원·정신과의원 <삭 제> 5. 공동활용병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은 자체병상을 확보하여도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없다. <삭 제>
---	---